

일시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 내 문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살기좋은 안전도시'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번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허가사항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 허가받은 기간, 면적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주시고, 허가사항 외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재허가를 받으시고 공사(작업) 시행
- (※ 허가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점검하고 있으며, 허가사항 초과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로(차도 및 인도) 위에 공사자재(시멘트, 자갈, 모래 등) 관리 미흡으로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정리 정돈 등 공사장 관리 철저
 - 공사(작업)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장(작업장) 주변 청소 실시

끝으로 우리 구에서 하시는 각종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며,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용 산 구